

제325회 정례회

2013. 12. 10(화)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임헌경 의원 외 6명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3년 12월 2일

나. 회부일자 : 2013년 12월 3일

3. 제안이유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내 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3조)

나.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안 제4조)

다.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및 관리(안 제5조, 제6조)

라.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경비지원(안 제7조, 제8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지진발생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예방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가. 「충청북도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진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